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1
----------	------

발의연월일 : 2014. 4 . .

발 의 자 : 안병배 의원

(찬성자 6 인)

1. 제안이유

-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항만구역과의 역차별·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인천광역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음.
- 위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증·개축이 가능하였던 기존 공장의 경우, 개정 규정(현행 조례)에 의하면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노후 시설 개선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수도권외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축을 규제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은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존 공장의 증·개축 규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활성화라는 조례 개정 목적에 반하고, 수도권 규제 정책에 벗어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는바,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기

존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시설 유지에 필요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건축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기존 공장의 증축·개축을 포함(안 제59조제3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형공장”을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개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 략)</p> <p>③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생 략)</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수리시설, 수산물 가공·제조시설, <u>도시형공장</u>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 바. (생 략)</p> <p>13. ~ 19. (생 략)</p> <p>④ (생 략)</p>	<p>제59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 ----- ----- ----<u>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개축</u>-----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13. ~ 19.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

②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 2012.4.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0.4.12, 2013.7.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⑦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0.4.12>

[전문개정 1994.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 2010.7.12. , 2012.4.10. , 2012.12.12. , 2013.10.16. >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안의 지식산업센터
 -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별표 1] <개정 2013.3.2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p>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p> <p>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p> <p>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p> <p>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p>
3. 기타지역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p> <p>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p> <p>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p>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 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비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으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산업위원회 안병배 의원